

※ 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안 친구대조표(2차) ※

조항	유형	현행	개정안	근거, 사유
제1장 총칙	신설	-	● 제2조~5조 신설	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특례 반영
제3장 제21조 통신기기 관리	추가	제21조【통신기기 관리】 1.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(MP3, PMP, 디지털카메라 등)도 특정한 사유 없이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.	● 제23조 수정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(디지털카메라, 교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기기 등)도 특정한 사유 없이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.	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특례 반영
제3장 제4절 학생자치회	신설 및 추가	관련사항 없음	● 제25조 추가 또는 제31조 신설 <지원시설 관련> - 학교는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,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. <예산 관련> - 학교는 학생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. <정책결정 참여보장 관련> -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등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.	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규정개선안 반영 -지원시설 관련 -예산 관련 -정책결정 참여보장 관련
제4장 학생생활지도	신설	-	● 제32조, 제37~45조 신설	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특례 반영
제42조 재심청구	신설 및 추가	제42조【재심청구】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 시간 및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 시간 없음	● 제55조 추가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.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.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	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규정개선안 반영 -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적 기간명시
제4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	추가 및 수정	제49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】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,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. 제50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】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(경기도 교육청 2010.10.26.)」에 따른다.	●제62조 추가 -규정개정심의위 구성 시 전문가위원 1인을 포함한다. 이때 전문가는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며,변호사, 단체 활동가, 대학 교수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지도사, 상담사,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.	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규정개선안 반영 -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

<p>제6장 개정 방법 및 규정개정 심의위원 회 (48조~5 0조)</p>	<p>신설</p>	<p>제50조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】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(경기도 교육청 2010.10.26.)」에 따른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6장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(조항명 수정) ● 제63~68조 신설로 기존 상위법에 대한 같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	<p>2023 학교생활 인권규정 운영 규정개선안 반영 -규정개정심의위 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, 절차 -제·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에 관한 방법</p>
<p>기타</p>	<p>변경</p>	<p>-</p>	<p>조항 번호 순연 및 서식 추가</p>	<p>신설, 삭제, 변경 으로 인한 이후 조항 번호 순연</p>